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97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 박수영・이인선・박성훈

김기현 • 송언석 • 정성국

강승규 · 최은석 · 곽규택

이종욱 의원(10인)

제안이유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증·개축 전면 허용(안 제 18조제1항제5호)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설립된 학교도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

나.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안 제36조제2 항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철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없도록 함.

다. 사용허가의 일시 중단(안 제36조제4항 신설, 안 제36조제5항)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 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을 연 장하도록 함.

라.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안 제73조의4 신설)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금전에 대해 종전의 현금뿐만 아니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

여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

법률 제 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전에 설립한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5년"을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5년"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실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로 한 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 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중 "허 가"를 "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 취소· 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자에게는 취소 또는 철회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수 있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철회 또는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사용・수익의일시 중단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 보상에 갈음하여 사용・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종전의 사용허가 기간에 더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를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한 경우 그 재산을"으로,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또는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 사실"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그 대부기간"을 "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으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부실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로 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사용료등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③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8조제1항제5호, 제3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73조 및 제73조 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2. 제73조의4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제2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 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 4. (생략)
-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 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 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 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 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 하는 경우
- 6. (생략)
- ② (생략)
-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생 략)
 -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아 개 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②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 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 4. (현행과 같음)
 - 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 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 진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 하는 경우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현행과 같음)
 - (2) ----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5년</u>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수있다.

③ (생략)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u>부실한</u> <u>증명서류</u>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 5. (생 략) <u><신 설></u>

<u>종선</u>
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5년
③ (현행과 같음)
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u>이 경우 제1호부터 제3</u>
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
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
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u>거짓으</u>
로 작성한 증명서류
2. ~ 5. (현행과 같음)
② 중앙관서의 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 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 하게 된 경우에는 그 <u>허 가</u>를 철회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 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

취소 · 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자에게는 취소 또 는 철회한 날부터 3년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 허가--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 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수익 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철회 또는 사용・수익 의 일시 중단으로 해당 사용허

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

<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u> <u>다.</u>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사용・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6조(대부기간) ① (생 략)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 보상에 갈음하여 사용・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종전의 사용허가기간에 더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제
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한 경우고 재산을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또는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 사실-

제46조(대부기간) ① (현행과 같 음)

② -----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그</u> <u>대부기간</u>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 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생 략)
 -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 3. (생략)
-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생략)
 -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 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 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

_				<u> 종</u>
<u>전</u>	<u>년</u> 의	대부기간에	관계없	이 제1
ਰ੍ਹੋ	강의	대부기간		
_				
_				
_				
_				
_				
\mathbb{G}	(ই	년행과 같음)		
제5	2조(매각계약의	해제)	
_				
_				
_				
_				
1.	. (현	[행과 같음)		
2.				
		거짓으로 결	작성한	증명서
	<u>류</u> -			
3.	. (현	[행과 같음)		
제7	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현
ਰੋਂ	병과	같음)		
2	2)			
_				
_				
_				

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법의 <u>체납처분</u>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조등) ①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미리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

<u>강제징수</u>
1. · 2.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 <u>(도시·군관리계획의</u>
협의 등) ①
<u>도시</u>
• 군관리계획
② (현행과 같음)
③
<u>도시・군</u>
 관리계획

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도시·군관리계획-----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 는 취득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 로 사용료등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 일로 본다.
- ③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 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 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 수단별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